

## IV.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운동

청일전쟁(淸日戰爭)의 승리와 갑오농민군 진압에 성공한 일본은 조선정부에 친일내각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조선지배에 나서게 된다. 이에 대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독일 등 대륙세력은 삼국간섭(三國干涉)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한 고종(高宗)과 명성황후(明成皇后)는 일본을 견제하고 자주적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인아거일책(引俄拒日策)[친러정책]으로 전환하고 친일내각을 붕괴시킨다. 그러자 조선의 인아거일책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그 주도자로 명성황후 민비(閔妃)를 지목하고, 그녀를 살해하니 이것이 을미사변[명성황후시해사건]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친일정권이 세워지나, 이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국왕 고종은 일본의 지배(支配)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관이어(俄館移御)[아관파천(俄館播遷)]이다. 이로써 다시 친일내각이 붕괴되고 반일적(反日的)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이어서 고종은 아관이어를 통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국·내외의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여, 환궁(還宮) 후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宣布)한다. 바로 이 대한제국 시기에 시행된 위로부터의 개혁이 광무개혁(光武改革)이다.

한편 갑신정변과 갑오농민전쟁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간층도 참가한 부르주아적 사회계층의 개혁운동이 일어나니 이것이 독립협회운동(獨立協會運動)이다.

### (1) 고종(高宗)의 아관이어[아관파천]

#### 1) 왜 아관이어(俄館移御)인가?

1896년 2월 11일 ‘국왕(國王)은 왕태자를 데리고 대정동(大貞洞) 아국(俄國) 공사관으로 이필주어(移蹕駐御)하고 왕태후와 왕태자비는 경운궁으로 이어(移御)하였다.’<sup>1)</sup> 흔히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불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파천(播遷)’의 사전적 의미는 ‘임금이 도성(都城)을 떠나 난리를 피(避)한다’는 뜻이다. 이 말 속에는 국왕(國王) 고종(高宗)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외국 공사관에 숨어들었다고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가치판단이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측 공식 기록은 ‘파천’이란 말을 쓰지 않았고, 일본 측 기록 등에서도 이 용어는 일관성 있게 쓰여지지 않았다.<sup>2)</sup> 그러므로 이 사건을 ‘임금이 거쳐하는 곳을 옮긴다’는 뜻의 ‘이어(移御)’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관이어(俄館移御)’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sup>3)</sup>

#### 2) 추진 배경

을미사변으로 고종과 명성황후가 추진하던 인아거일책이 일시 좌절되고, 친일적인 제3차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실질적으로 경복궁에 연금되어 있던 고종은 이러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구 열강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히 아관파천(俄館播遷)이라 불리는 아관이어는 일본의 예측에서 벗어나고, 제한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속에 추진되었다.

1) <<高宗實錄>> 권34, 建陽 원년 2월 11일조. ‘上與王太子移蹕駐御于大貞洞俄國公使館 王太后王太子妃移御于慶運宮’

2) <<高宗實錄>> 권34, 建陽 원년 2월 11일조 ; <<承政院日記>> 開國五百五年 丙申 二月十一日條. ‘上駐俄國公使館’ ; <<日本外交文書>>나 <<駐韓日本公使館記錄>>과 같은 일본측 기록에는 행행(行幸), 임어(臨御), 이어(移御), 파천(播遷)이란 표현들이 어떤 일관성없이 쓰여지고 있다.

3) 박진철, <1896년 高宗의 俄館移御와 王權強化>, <<전남사학>> 제18집, 2002.

갑오개혁 이후 약화되었던 왕권이 고종의 노력에 의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sup>4)</sup>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삼국간섭 이후 조선이 러시아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에 일본은 당황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약화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sup>5)</sup>을 일으키게 된다. 이후 성립된 친일내각은 거의 전적으로 일본의 군사력과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왕권은 철저히 제한되었고, 고종은 생명과 지위의 위협에 불안해하였으며, “사실상 봉급을 받아가며 포고문에 서명을 해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게”되었다.<sup>6)</sup> 그러므로 고종은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의 재편은 곧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자신의 조선침략을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자주독립[반청독립(反淸獨立)]’시키는 것으로 미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반청독립(反淸獨立)’은 일본이 가져다주는 것이었고, ‘일본으로의 예속’으로 결말지어졌다.<sup>7)</sup> 한편, 1894년 말 이노우에 일본공사는 조선정부에 대해 국시(國是)을 제정하도록 강요하였다. 1894년 10월 23일 이노우에는 20개조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20조에 ‘국시를 일단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2월에 이르러 국시는 ‘자주독립(自主獨立)’으로 공포되었고, 12월 16일에는 “지금부터 만약 거짓말을 하고 국시를 뒤흔들어 놓는 자가 있으면 원소(原疏)는 받아들이지 말고 진소인(陳疏人)은 법무아문에 명령하여 잡아다가 엄정하게 할 것”이 칙령 24호로 공포되었다.<sup>8)</sup> 이의 후속조치로서 1895년 1월 5일 “자주독립(自主獨立)을 방해하는 자를 부도국적(不道國賊)으로 처벌하는 건”이 내무아문령(內務衙門令) 1호로 공포되었다. ‘반청독립(反淸獨立)’은 일본의 조선침략을 미화하고 ‘일본으로의 예속’을 내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 제정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는 조선의 국내법 제정을 통해 일본의 조선침략을 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반청독립이 1896년 1월부터 건양(建陽) 연호의 사용, 양력(陽曆)의 사용으로 구체화되었고, 개혁정치는 단발령으로 상징화되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고 반청독립이 확실해질수록 일본에의 예속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개화파 정권은 더욱 더 안정되어 갈 것이며 고종 왕권은 무력화되어갈 것이었다.<sup>9)</sup>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이 제한된 왕권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치적 사건이 바로 아관이어었던 것이다.

### 3) 추진 과정

아관이어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근왕세력을 통해 전국 각처에서 의병봉기를 추진함으로써 친위대를 지방으로 출동토록 함으로써 궁성수비를 약화시킴. ② 러시아공사와 협력하여

- 4) 1894년 6월 21일(음력, 이하 1895년 11월 16일까지는 음력, 그 이후는 양력 표기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왕권은 입헌군주제적 정치체제를 수립하려는 개화파의 정책에 의하여 철저히 제한되었다. ; 갑오개혁 이후 고종의 왕권회복 노력에 대해서는 오영섭, <甲午更張 中 高宗의 王權恢復運動>, <<구한말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0, 참조.
- 5) 명성황후시해사건[을미사변]에 대해서는 최문형 외, <<명성황후시해사건>>, 민음사, 1992 ; 조항래, <19세기말~20세기초 일본대륙낭인의 한국침략행각연구> <<국사관논총>> 79, 국사편찬위원회, 1998 ; 하현강, <옥호루의 참극 - 을미사변 ->, <<한국현대사>> 2 , 1969 참조.
- 6) Isabella Bird Bishop, 1898 Korea and Her Neighbours(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나라>> 살림, 1994), 313쪽
- 7) 이상찬, <1896년 義兵運動의 政治的 性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22~23쪽 참조. 여기에서 이상찬은 ‘反淸獨立’은 ‘일본으로의 예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선 것은 개화파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 8)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 近代法令編, <<議案.勅令上>>, 212쪽.  
'自今如有妄託言事搖動國是者 原疏勿爲捧入 陳疏人直令法務衙門拿獲嚴懲.'
- 9) 이러한 建元의 문제와 國是제정이 가져오는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상찬, 앞의 논문, 22~28쪽 참조.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 ③ 준비가 완료되자 궁궐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移御) 함. ④ 친일내각이 붕괴되고, 이범진, 이완용, 윤치호 등 새 내각이 구성됨.

고종은 이범진 등을 통해 아관이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서 두 가지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 첫 번째 정책은 친위대를 지방으로 출동토록 함으로써 궁성수비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러시아공사와 협력하여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 일본세력을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고종은 첫 번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근왕세력을 통해 전국 각처에서 의병봉기를 추진함으로써 이 방법을 실행하였다.<sup>10)</sup> 고종(高宗)은 친위대의 전신인 훈련대를 견제하기 위해 삼국 간섭 후인 1895년 윤5월 25일에 칙령 제122호를 반포하여 훈련대 외에 시위대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에 친로파 현흥택(玄興澤), 제1대장에 이학균(李學均), 제2대장에 이진호(李軫鎬)를 임명하여 왕실호위를 전담하게 하고자 하였다.<sup>11)</sup> 시위대를 신설함과 동시에 고종은 홍계훈(洪啓薰)을 박영효(朴泳孝)가 장악하고 있던 훈련대의 연대장에 임명하여 훈련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였다.<sup>12)</sup> 그러나 훈련대는 제2대대만 심상훈(沈相薰)의 심복인 이도철(李道徹)이 장악하였을 뿐 정작 중요한 이진호(李軫鎬)의 제1대대와 우범선(禹範善)의 제2대대는 여전히 홍계훈의 수중에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훈련대는 고종에게 눈속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sup>13)</sup> 그래서 고종은 8월 14일에 훈련대의 실무장교인 성창기(成暢基), 신우균(申均均), 조의범(趙義範), 안태승(安泰承), 권학진(權學鎭), 이대규(李大珪) 등에게 일본유학을 명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훈련대의 지휘부를 근왕세력으로 교체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인사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아울러 고종은 8월 19일에 훈련대의 무기를 거두어들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군부대신 안경수(安駟壽)로 하여금 훈련대를 해산하겠다는 의사를 삼포오루(三浦梧樓) 일본 공사에게 전하게 하였으나 을미사변으로 무산되고 말았다.<sup>15)</sup> 이진호, 우범선, 이두항 휘하의 훈련대는 을미사변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고종을 경복궁에 유폐·감시하는 악역을 담당했던 것이다. 을미사변 직후인 8월 22일에 군부대신 조희연(趙義淵) 명의로 시위대(侍衛隊) 장졸(將卒)을 훈련대에 편입시킴으로써 친일적 개화세력이 병권을 장악하였다.<sup>16)</sup> 그러나 훈련대에 대한 내외의 비난이 적지 않았으며, 또 러시아공사가 훈련대를 해체하고 조희연을 군부대신직에서 해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sup>17)</sup> 이에 김홍집 내각은 1895년 9월 13일에 훈련대를 폐지하고 그 대신 친위대 2개대대를 설치함으로써 내외의 여론을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또 동시에 '육군편제강령(陸軍編制綱領)'을 반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1개 대대 당 4개중대로 이루어진 친위대는 경성(京城)에 주둔(駐屯)하여 왕성(王城) 수비(守備)를 전담토록 하였다. 이미 일본측과 조선정부간에는 조선의 소요가 일어날 경우 대구(大邱)(2개 소대), 낙동(洛東), 부산(釜山), 용산(龍山), 개성(開城), 가흥(嘉興)(이상 1개 소대)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수비대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참전하고 이외에는 조선군이 진압하기로 사전약속이 되어 있

10) 물론 을미사변 후의 모든 의병봉기가 아관이어를 위한 고종의 밀지와 관련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제의 성격상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11) <<高宗實錄>> 高宗 32년 윤 5월 25일조 ; <<官報>> 開國 504년 윤5월 27일 참조. 또 黃炳茂, <日本이 施行한 軍制改革과 京軍>, <<論文集>> 5, 육군사관학교, 1967, 118쪽 참조.

12) <<官報>> 開國 504년 윤5월 25일 참조.

13) 杉村濬, <<在韓苦心錄>>, 東京:勇喜社, 1932 (한상일 역·해설, <<서울에 남겨둔 꿈>>,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3), 224쪽 참조.

14) <<高宗實錄>> 高宗 32년 8월 14일조 참조.

15) <<알의 책>> 高宗 32년 8월 20일조 ;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1992, 204(㉔) 213 쪽 참조.

16) <<日省錄>> 高宗 32년 8월 22일조 ; <<官報>> 開國 504년 8월 26일 참조.

17)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1993, 140쪽 [訓練隊해체에 관한 小村公使의 견해를 駐露公使에게 통보] 참조.

었다. 이런 이유로 단발령 후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자 이 사전약속에 따라 친위대가 지방으로 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미 서울에는 친일적 개화세력이 장악한 친위대 병력 일부와 춘생문사건 때에 근왕세력에 가담한 친위 제2대대 병력 일부만이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은 자연스럽게 군사적으로 공동화되었다. 그러므로 의병봉기를 획책하여 친위대를 지방으로 출동시키려는 고종의 책략은 성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과연 고종이 의병봉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sup>18)</sup>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병의 봉기가 고종의 지시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은 밀칙(密勅)[밀지(密旨), 애통소(哀痛詔)]의 존재로부터 제기된다. 정교(鄭喬)는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에서 “각 처 의병은 모두 밀칙(密勅)을 받고 일어났다”고 하였다.<sup>19)</sup> 1896년 무렵의 밀칙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의병에게 내린 밀칙이 있다. 의병에게 내린 밀칙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은 <<김하락진중일기(金河洛陣中日記)>>에 실린 것이다. 이에 의하면 김하락은 아관이어 보름전인 1월 27일에 밀칙을 받았다고 한다.<sup>20)</sup> 이후 유인석(柳麟錫)을 제외한 모든 의병이 밀칙(또는 밀지, 애통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유인석 관련 자료들에 밀지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기우만(奇宇萬)은 유인석 역시 밀지를 받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고종이 전국의 의병에게 밀칙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sup>21)</sup> 이범진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소응 역시 밀지를 받았다고 하며 이소응은 민용호, 최문환 등에게 이 밀칙을 전달하였다. 최문환은 소모장(召募將)으로 임명할 때 주었다고 하며, 민용호에게는 이경응을 통해 전했다고 한다. 최문환이 함흥부에 잡혔을 때 함흥부에서는 이 밀칙을 압수하여 중앙으로 보냈다고 한다.<sup>22)</sup> 따라서 밀칙이 의병들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밀칙이 의병봉기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두 번째, 아관이어 당시 보부상을 동원하기 위한 밀지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은 사변 전에 당시 충청 황해 경기도에 있는 보부상에게 밀지를 내려 11일을 기해 京城에 일제히 모여 왕궁을 호위하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당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보부상으로서 궁문 앞에 모여든 자가 수 천명에 이르렀으며<sup>23)</sup>

밀지를 전달한 사람은 박정양(朴定陽)과 이윤용(李允用) 등이라고 한다. 경기도에서는 전원이, 충청도와 황해도에서는 과반수의 보부상이 올라왔고, 2월 11일 이른 아침부터 대궐 문전을 비롯한 큰 길에 보부상(褫負商) 차림의 사람들이 꽉 찼었다고 한다. 보부상들은 2월 10일 밤 일본공사관을 습격하려는 계획도 하였다고 하며, 종로에서는 김홍집의 시체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시체를 발로 짓이겨서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sup>24)</sup> 고종이

18) 아관이어와 의병봉기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상찬, 앞의 논문, 87(㉞)111쪽 참조.

19) 鄭喬, <<大韓季年史>> 上, 139쪽. ‘各處義兵 皆受密勅而起’.

20) <金河洛陣中日記> (<<獨立運動史資料集>> 제1집 <義兵抗爭史 資料集> 수록) 588쪽 참조. <倡義見聞錄>(<<獨立運動史資料集>> 제1집 <義兵抗爭史 資料集> 수록)에 실린 밀지의 날짜는 12월 15일(양력 1896년 1월 29일)이고, <<關東倡義錄>>에 실린 밀지의 날짜는 12월 28일(양력 1896년 2월 11일)로 되어 있다. <倡義見聞錄>647쪽 및 <<關東倡義錄>>24~25쪽 참조.

21) <松沙集> (<<獨立運動史資料集>> 제3집 <義兵抗爭史 資料集> 수록) 27~28쪽. ‘이때 의암 柳麟錫이 임금의 조서를 받들고 경기도내에서 창의하였다는 격문이 오니 (중략) 주상전하로부터 密詔가 나가 내외로 하여금 의병을 일으키게 하여 각도 의병에 軍號를 내려주고’

22) 이소응과 최문환의 밀지에 대해서는 1896년 5월 11일, <함흥부관찰사 김유성 보고서 제2호> 및 6월 25일, <함흥부관찰부 보고서 제5호>, <<司法稟報>> 8, 9책 참조.

23)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책, 1993, 143~4쪽, 1896년 2월 17일, 機密第12號 親露派 李範晉 등의 陰謀에 관한 報告.

밀칙을 내렸을 가능성은 또 있다. 1896년 2월 15일자 일본공사관 보고에 의하면 고종이 “이 범진 등에게 한번 복수의 뜻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설사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감히 마다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sup>25)</sup> 이 말을 한 것이 아관이어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고종이 복수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지를 이범진 등에게 밝힌 것만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의병부대에 내려진 밀칙(密勅)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고종이 밀칙을 통해 의병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고, 그 밀칙이 의병활동을 활성화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26)</sup> 현재로서는 밀칙의 원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종이 밀칙을 직접 내렸는지의 여부는 밀칙 원본이 발견될 때까지는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국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허수아비 국왕에 불과하게 되고, 이것은 고종이 친정(親政) 이후로 일관되게 노력해 왔던 전제적(專制的) 왕권(王權) 확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왕권강화를 위한 의지가 확고했던 고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두 번째 방책의 실현을 위해 우선 고종은 이범진(李範晉)을 통해 자신의 불안한 처지와 러시아의 지원을 호소하는 메모를 비밀리에 전했다. 또한 1월 중순에는 전임·현임 두 러시아공사가 알현을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고종 자신이 직접 스페이에르의 주머니에 쪽지를 넣어주기까지 하였다. 그 내용은 러시아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었으므로 고종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진 셈이었다. 고종은 러시아가 ‘군주전제국(君主專制國)’이기 때문에 러시아만이 조선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 러시아를 끌어들여야만 조선에서 열강간 세력균형을 유지시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강력한 인아거일책(引俄拒日策)을 채택하였던 것이다.<sup>27)</sup> 이에 스페이에르는 고종이 러시아의 지원과 개입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음을 거듭 본국에 타전하였다. 그러나 외부대신 로바노프(Aleksei Borisovich Lobanov-Rostovski)는 “러시아 당국은 스페이에르의 안(案)<sup>28)</sup>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군사파견은 거절한다”는 훈령을 보냈다. 바로 이때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하겠다는 발상이 고종측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대해 스페이에르는 “그 계획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생각하였고, 이범진은 상황이 몹시

24)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책, 1993, 136(※)138쪽, 1896년 2월 13일, 機密第11호 朝鮮國 大君主 및 世子宮 露國公使館에 入御한 顛末報告.

25)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0, 1994, 90쪽, 1896년 2월 15일, 奉露主義者의 國王播遷計劃에 관한 보고.

26) 오영섭, <을미의병운동의 정치사회적 배경>, <<국사관논총>> 65집, 1995 참조. 한편 ‘밀지가 내려졌다는 기록이 있고, 의병들이 밀지의 영향을 받아서 봉기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高宗이 직접 밀칙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이후 高宗이 정국 주도권을 점차 상실해갔고, 왕후 시해 이후 高宗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생활하였으며, 밀칙을 내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高宗이 의병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상찬, <1896년 의병운동의 정치적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그러나 이는 高宗을 무능하고 유약하게 보는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밀칙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밀칙이 高宗에 의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막연한 단정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다. 당시의 高宗이 조선 정국에서 가장 노획한 정치가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7) 이는 물론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최대한 억제한 가운데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 우위의 현 상황을 유지하여 손쉽게 이권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고종은 을미사변 후에 밀사 權東壽를 海參威(Vladivostok)에 파견하여 러시아정부에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1992, 110~111쪽). 고종의 引俄정책은 을미사변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對러시아 교섭을 전담한 인물은 李範晉·玄興澤·閔商鎬 등 親露派 인사였다(최문형, <閔妃弒害 以後의 列強과 朝鮮>, <<明成皇后弒害事件>>, 민음사, 1992, 193~200쪽 참조).

28) 스페이에르는, 첫째 조선의 상하 모두가 일본을 증오한다는 것과 일본이 곧 조선을 삼킬 상황이라는 것, 둘째 조선현지의 사정으로 보아 일본과의 협상은 불가능하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은 서울 주둔의 일본군 병력만큼 러시아가 군사를 파견하여 해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민원, <아관파천>, <<한국사>>41, 국사편찬위원회, 1999, 53쪽.

다급하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마침내 스페이에르와 웨베르는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그 계획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승인을 즉각 요청하였으며, 러시아 당국에서는 이를 승인하면서 러시아 황제도 즉각 자국 군함의 인천 입항을 명하였다는 것이다.<sup>29)</sup> 러시아의 의향을 확인한 고종은 스페이에르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였고, 이로부터 아관이어를 위한 예비작업이 은밀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2월7일 스페이에르는 고종에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고,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경비병이 배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스페이에르는 이러한 고종의 뜻을 빌려 인천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 군함의 제독에게 서울에 수병을 파견하도록 조치하였고, 러시아장교 4명과 수병 100이 의병의 서울 진공에 대비한 공사관 보호를 명목으로 야포 한 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왔다.<sup>30)</sup> 2월 9일 러시아 공사관 수비대는 150명 이상으로 증강되었고, 다음날 고종은 알렌 공사에게 러시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가 어떤가를 물었다. 알렌은 고종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왔다.<sup>31)</sup> 준비가 완료되자 왕과 왕태자는 이른 아침 궁녀의 가마를 타고 궁궐을 빠져 나와 러시아 공사관에 이르게 되었다.<sup>32)</sup>

고종의 아관이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향후의 조선에 대한 방침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러시아는 고종의 아관이어에 대해 결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이 희망 사항이었다. 이후 러시아 당국의 대조선 방침의 맥락은 ① 일본의 독점적 조선지배를 저지하여 조선을 일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② 적어도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완성까지는 명목상이나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게 하여 타국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유지되어 갔다.<sup>33)</sup> 서울의 스페이에르와 웨베르는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체류로 인해 야기될지 모르는 조선 내외의 비판적 여론을 우려하여 표면적으로는 조선 내각의 구성에도 관여하기를 꺼렸다.

한편 고종의 아관이어로 인해 조선에서 입지가 강화된 러시아와 달리 일본은 “천자를 빼앗겨 이제 만사가 끝장났다”<sup>34)</sup>고 할 정도로 입지가 실추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러시아의 의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사토우는 일본정부는 고종의 아관이어에 관한 러시아의 희망과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본정부가 알고 있는 것은 “아관파천이 러시아정부의 사전인지 없이 모의되었지만, 러시아정부는 이

29) Lensen, op.cit., pp.582~ 583. ; Hiller to Beaclerk, Inclosure 3 in No.2, Seoul, Feb. 12, 1896, F. O. 405-VIII.(이민원, <아관파천>, <<한국사>>41, 국사편찬위원회, 1999, 55쪽에서 재인용)

30) 영국 관찰에 따르면 러시아 정교 4명과 수병 100명이 야포 1문을 이끌고 입경했다( Hillier to Beauclerk, Inclosure 3 in No.2, Seoul, Feb. 12, 1896, F.O. 405-VIII) (이민원, <아관파천>, <<한국사>>41, 국사편찬위원회, 1999, 55쪽에서 재인용)

31) Fred Harvey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이광린 역, <<開化期の 韓美關係>>, 일조각, 1973, 303쪽 참조.

32)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길 때까지는 용의주도한 계획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책>>, 304쪽 참조.

33) 이민원, <일본의 압제와 高宗의 俄館播遷>, <<重山鄭德基博士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96, 670쪽 참조.

34) Satow to Salisbury, No.23, Tokio, Mar. 12, 1896, F.O.405-VIII, (이민원, <아관파천>, <<한국사>>41, 국사편찬위원회, 1999, 61쪽에서 재인용)

“조선의 上下人心이 모두 제국(일본)에 이반되었고 소위 일본파라는 세력은 땅에 떨어졌다”고 한 가토오의 증언과, “천자를 빼앗겼으니 이제 만사가 끝장났다”와 한 고무라의 한탄은 민비시해 이후의 조선에 있어서의 당시 일본의 처지를 실감나게 논증해 주고 있다. : 최문형, <<열강의 동아시아정책>>, 일조각, 1979, 17쪽 ; 外務省 편, <<小村外交史>>, (東京, 1965), 92쪽 (최문형 외, <<명성황후 시해사건>>, 민음사, 1992, 213쪽에서 재인용)

미 이루어진 일을 승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sup>35)</sup> 이후 일본은 우선 아관이어에 대한 러시아당국의 사전인지 여부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력함과 동시에 협상을 모색하였다. 곧이어 니시 도쿠이로(西德二郎, 駐露公使)와 히트로보 등이 각기 러시아정부의 ‘사전인지가 없었다’고 알려오자, 일본정부는 일단 러시아의 의도가 한국보호국화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sup>36)</sup> 이렇듯 1896년 2월 11일의 고종의 아관이어는 러시아측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고종측의 적극적 사전계획과 추진<sup>37)</sup>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고종은 의병과 러시아 세력을 이용해 일본을 견제하고 왕권을 회복하려 했던 것이다.

#### 4) 결과

이범진과 이완용 등의 영접을 받으며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곧바로 경무관(警務官) 안환(安桓)을 불러들여 김홍집(金弘集), 정병하(鄭秉夏), 유길준(兪吉濬), 조희연(趙羲淵), 장박(張博) 등의 5대신을 역적(逆賊)으로 규정하여 포살(捕殺)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한편 서울 거리에는 “국운(國運)이 불행하여 난신적자(亂臣賊子)가 해마다 화(禍)를 일으켜 변(變)을 낳게 하여 짐(朕)은 러시아 공사관에 이어(移御)하였으니 안심하라. 역적(逆賊) 조희연(趙羲淵), 우범선(禹範善), 이두황(李斗璜), 이진호(李軫鎬), 이범래(李範來), 권형진(權滢鎭)은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참수래헌(斬首來獻)하라”는 내용의 포고문이 나붙게 되었다.<sup>38)</sup> 이로써 친일정권(親日政權)은 완전히 몰락당하고, 비일본파(非日本派)로서 신내각(新內閣)을 조각(組閣)하게 되었다.<sup>39)</sup> 먼저 당일 공표된 내각의 구성은 김병시(金炳始)[총리], 이재순(李載純)[궁내부대신], 박정양(朴定陽)[총리대신서리 겸 내부대신], 조병직(趙秉稷)[법부대신], 이완용(李完用)[외부대신겸 학부, 농상공부대신서리], 이윤용(李允用)[군부대신], 안경수(安駟壽)[경무사대신], 윤용구(尹用求)[탁지대신] 등이었고, 같은 달 12일에 윤치호(尹致昊)[학부대신서리 겸 학부협판], 22일에 이범진(李範晉)[법부대신], 조병직(趙秉稷)[농상공부대신] 등이 등장하였다.<sup>40)</sup> 대체로 초기에는 정동파(貞洞派)인사, 그 중에서도 친미파(親美派)인물들이 전면에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친러파(親露派) 인물로 볼 수 있는 자는 이윤용 한 사람 뿐이었고 친러파의 핵심인물인 이범진은 10여 일 뒤에야 기용되고 있다.<sup>41)</sup>

한편 고종은 신임 내각원 중 가장 먼저 총리대신서리 겸 내부대신 박정양을 러시아공사관으로 불러들여 사후수습책을 상의한 뒤 조칙(詔勅)을 잇따라 발표하였다.<sup>42)</sup> 이들 조칙의 내용을 살

35) Satow to Salisbury, No.23, Tokio, Mar. 12, 1896, F.O.405~VIII, (이민원, <아관파천>, <<한국사>>41, 국사편찬위원회, 1999, 61쪽에서 재인용)

36) Satow to Salisbury, No.23, Tokio, Mar.12, 1896, F.O.405~VIII. 러시아정부의 사전인지가 없이 모의되었다는 것은 ‘아관이어’의 주도자가 高宗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7) 조선주재 미국 공사 쉴은 고종이 러시아를 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10, 1994, 18쪽, 附屬書, 조선주재 미국공사의 전문, ‘국왕과 내각은 여전히 러시아공사관에 머물고 있음. (중략) 국왕은 막후에서 돈으로(러시아를?) 지배하는 것 같음’ 실 미공사 (The King and Cabinet are still at Russian Legation. (중략) The King seems to govern with pay (Russia?) behind the throne.)

38) <<日本外交文書>> 권29, 689~690쪽. 문서번호 353호. 이 같은 내용의 布告文에 대해서는 王의 詔勅이라고 일본 외교문서에는 있으나, 國王은 모르는 일이라 하여 官報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39)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0, 1994, 11~12쪽, 機密送第20號 [朝鮮國王 俄館移御件]o [別紙] 機密第6號, 朝鮮大君主陛下 在韓露國公使館 移御 件.

40) <<舊韓國官報>>, 建陽 원년(1896) 2월 11일~3월말까지의 敍任及辭令.

41) 貞洞派 및 親美派의 구분에 대해서는 유영익, 앞의 책, 49.179.184쪽 및 한철호, <갑오경장중(1894~1896) 정동파의 개혁활동과 그 의의>, <<국사관논총>> 36, 국사편찬위원회, 1992 참조.

42)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2월호, ‘The King of Korea in the Russian Legation’ 및 North China Herald, 1896년 2월 28일, ‘The King of Corea in the Russian Legation’ 참조.

해보면, 첫째 김홍집 등 전(前) 내각원의 권력 농단과 민비시해로 인한 국가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관이어하였음을 천명하는 동시에 김홍집 등을 ‘국적(國賊)’으로 규정하고 일본으로 도망간 유길준·조희연 등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아관이어의 불가피성과 신내각의 정통성을 천명하였다.<sup>43)</sup> 둘째, 춘천(春川) 등지의 의병활동을 ‘국모(國母)시해사건의 ‘설원(雪怨), 설분(雪憤)’으로 일어난 애국적 행위라고 치하하되 조속히 귀가하여 본업에 힘쓰도록 권유함으로써 의병을 해산시키고자 한 것이다.<sup>44)</sup> 이와 아울러 고종은 남궁억(南宮億), 최익현(崔益鉉), 신기선(申箕善), 이도재(李道宰) 등을 각도(各道)의 선유사(宣諭使)로 임명하여 의병해산을 촉구하였고, 내부대신 박정양은 단발령을 취소한다는 훈시(訓示)를 내렸다.<sup>45)</sup> 셋째,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잠시 이어하였음을 고시하면서 도피한 ‘역적(逆賊)’들을 체포하여 정국이 안정되면 곧바로 경운궁으로 이어할 것을 천명하는 한편 여러 가지 민심수습책을 제시하였다.<sup>46)</sup> 이어 고종은 2월 16일에도 재차 ‘이국편민(利國便民)’의 방도를 강구하여 문명한 경지에 도달하는 데 힘쓸 것이며 경운궁의 수리가 끝나는 대로 이어하겠다는 조칙을 반포하였다.<sup>47)</sup> 이와 함께 고종의 아관이어 직후 성립된 내각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정동파 인사들이 요직을 거의 차지한 이외에는 탁지부대신 윤용구(尹用求)와 궁내부대신 이재순(李載純)만이 기용되었을 뿐이다. 그 후 민비시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종결되고 이범진이 법무대신직을 사임하자 1896년 4월 20일에 한규설(韓圭高)이 법무 대신직에, 4월 22일에 윤용선(尹容善)과 심상훈(沈相薰)이 총리대신, 탁지부 대신직에 각각 임명됨으로써 수구파(守舊派)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증대된 듯하였다. 수구파가 정계내에서 세력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지방의 의병활동을 진무하기 위해 남로선유사(南路宣諭使)로 파견되었던 신기선(申箕善)과 이종건(李鍾健)이 6월 4일과 13일에 각각 학부대신과 경무사로 취임하던 때부터이다. 신기선은 학부대신 취임의 전제조건으로 고종에게 단발(斷髮)과 양복착용 폐지, 언문(諺文)과 양력(陽曆) 사용 중지, 내각제도의 폐지 등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갑오경장 중에 개혁된 제도들을 모두 그 이전의 체제로 복구시키라고 주장하였다.<sup>48)</sup> 고종은 신기선의 상소를 표면상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가 학부대신 취임 직후 관립학교 학생들의 교복착용을 폐지하고 학부 내에서 일요일(日曜日) 휴업을 폐지한 조치를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구파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주었다.<sup>49)</sup> 신기선의 학부대신 취임 이후부터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하에 진행된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 등 각종 제도의 개혁 여부를 둘러싸고 정동파는 수구파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sup>50)</sup>

수구파는 지방제도에 앞서 내각의 폐지와 의정부의 부활을 골자로 한 중앙정부제도를 먼저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병시 등은 고종의 밀지(密旨)를 받아 종전 6부에 외부(外部)를 증설하여 7부로 개편하고, 대신(大臣)과 협판(協辦)의 명칭을 상서(尙書)와 시랑(侍郎)으로 변경하

43) <<高宗實錄>>, 建陽 원년 2월 11일, 15일, 23일 참조.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춘생문사건 관련자 중 수감 중인 안경수 등 7인을 특방·사면시키고 그 당시 사망했던 林最洙·李道轍 등의 官爵을 복구시키는 한편 현재 감옥서에 갇혀 있던 죄인들을 석방시키기도 하였다. <<詔勅·法律>>(서울대학교 도서관, 1991), 55쪽, 勅令·詔勅 : <<高宗實錄>>, 建陽 원년 2월 11일 및 20일조.

44) <<高宗實錄>>, 建陽 元年 2월 11일, 18일조.

45) <<日省錄>>, 建陽 元年 2월 12일, 20일, 27일조.

46) <<高宗實錄>>, 建陽 元年 2월 13일, 16일조.

47) <<官報>>, 建陽 元年 2월 16일 號外, 詔勅 참조.

48) <<독립신문>>, 1896년 6월 4일, ‘잡보’ 참조.

49)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6월호, ‘The Memorial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 험버트 지음, 신복룡 옮김, <<대한제국멸망사>>, 평민사, 1984, 156쪽 참조.

50) 정동파와 수구파의 정치적 대립에 대해서는 한철호, <<俄館播遷期 貞洞派의 개혁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집, 1996 참조.

는 의정부제도의 복구안을 제출하였다.<sup>51)</sup> 또한 신기선, 심상훈 등은 승정원(承政院)을 부활시키는 한편 관명, 직명을 구제(舊制)로 개정할 것을,<sup>52)</sup> 이종건은 내부대신 직속 하에 있던 경무청을 종전의 포도청(捕盜廳)으로 바꾸어 국왕(國王)의 관할 아래 둘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sup>53)</sup>

고종은 정동파와 수구파의 대립에서 수구파인사의 기용을 통해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sup>54)</sup>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신기선, 이종건 등은 또 다시 정동파를 정계에서 축출하려는 공작을 벌였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고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구파들의 의정부 복구론에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55)</sup> 따라서 더 이상 내각체제 고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동파는 9월 24일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정의 운영권을 국왕(國王)에게 부여하면서도 가능한 한 내각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서 단행된 인사조치에서 수구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던 반면<sup>56)</sup> “이윤용(李允用), 이완용(李完用) 등의 구영어파(舊英語派)는 국왕의 신임을 잃어 날로 쇠퇴”해 갔다.<sup>57)</sup> 내각제 폐지문제는 1896년 2월 말경에 남로선유사로 파견되었다가 6월 4일에 학부대신으로 취임한 신기선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당시의 모든 주요 관제를 갑오경장 이전으로 복구시키라는 상소를 국왕에게 올렸다. 그는 내각제도에 대해 “정부에 규칙이 있어 내각대신이 국사를 의론하여 일을 작정하는 것은 임군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요 백성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이왕 정부에 있던 역적들이 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sup>58)</sup> 6월 초순 고종은 내각을 폐지하는 대신 “의정부제도를 복구하라”는 밀지(密旨)를 김병시 등에게 내렸다.<sup>59)</sup> 이 밀지를 받들어 김병시 등은 영의정 및 좌,우의정을 두고 각부의 명칭을 이. 호. 예. 병. 형. 공. 외부(吏. 戶. 禮. 兵. 刑. 工. 外部) 등 7부로, 대신(大臣)을 상서(尙書)로, 협판(協辦)을 시랑(侍郎)으로 각각 바꾼다는 취지의 의정부제도 복구안을 국왕에게 올렸다.<sup>60)</sup> 아울러 신기선, 심상훈 등 수구파들은 완고한 지방 유생층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정원을 부활시키고,<sup>61)</sup> 다른 관명, 직명들을 구제(舊制)로 복고, 개정하려고 시도하였다.<sup>62)</sup> 그러나 이러한 수구파의 내각폐지 시도는 정동파의 반발로 말미암아 일단 좌절되었다.<sup>63)</sup>

내각의 존폐문제는 국왕의 권한에 직결된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동파관료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왕 및 수구파와 적절한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1896년 9월 24일에

51)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 1994, 1896년 6월 30일, 報告 제3호, 64쪽. ; <<東京朝日新聞>>, 1896년 6월 26일, ‘官制變更密旨’ ; 6월 30일, ‘制度復舊案’ 등 참조.

52) <<漢城新報>>, 1896년 6월 16일, ‘閣議廢止風說’ ; <<東京朝日新聞>>, 1896년 7월 17일, ‘制度復舊’ 및 ‘承政院再興’ 참조.

53)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 1994, 59~63쪽. 1896년 6월 20일, 報告第2號, 京城臨時代理公使 加藤 增雄 → 侯爵 西園寺 公望 殿.

54)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8월호, ‘Reaction’ 참조.

55) <<東京朝日新聞>>, 1896년 9월 10일, ‘守舊派勢力’ 참조.

56) <<高宗實錄>>, 建陽 원년 9월 24일조 참조.

57) <<東京朝日新聞>>, 1896년 10월 8일, ‘內閣廢止’ 참조.

58) <<독립신문>>, 1896년 6월 4일, ‘잡보’. 또한 <<東京朝日新聞>>, 1896년 6월 25일, ‘守舊大臣’ 참조.

59) <<東京朝日新聞>>, 1896년 6월 26일, ‘官制變更密旨’ 참조.

60) <<日館記錄>> 11, 64쪽, 報告 제3호, 1896년 6월 30일, 加藤 ; <<東京朝日新聞>>, 1896년 6월 30일, ‘制度復舊案’ 참조.

61) <<漢城新報>>, 1896년 6월 16일, ‘閣議廢止風說’ ; <<東京朝日新聞>>, 1896년 7월 7일, ‘承政院再興’ 참조.

62) <<東京朝日新聞>>, 1896년 7월 17일, ‘制度復舊’ 참조.

63) <<東京朝日新聞>>, 1896년 8월 6일, ‘制度改革の頓挫’ 참조.

정동파는 갑오경장 당시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改稱)함으로써 “전헌(典憲)은 이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中外는 이로 말미암아 소연(騷然)하여 백관만민(百官萬民)의 우분통해(憂憤痛賊)함이 이제 3년이며 국가의 오류(汚隆)에 관계됨이 또한 컸다”고 반성하되, “구장(舊章)을 솔(率)하되 신규(新規)를 참고(參考)하여 무릇 민국(民國)의 편의(便宜)에 관계된 것은 짐작 절충하고 반드시 시행되기를 힘쓴다”는 개정 원칙에 입각하여 내각의 기능을 살리면서 전통적 의정부의 형식을 갖춘 절충형의 새로운 의정부체제를 복설하기에 이르렀다.<sup>64)</sup> 이에 의거해서 당일에 칙령(勅令) 제1호로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가 발표되었다. 이 ‘의정부관제’는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께서 만기(萬機)를 통령(統領)하사 의정부(議政府)를 설치(設置)하시니”라고 규정하여 국정의 운영권이 국왕에게 있음을 선포한 전문(前文)과 3관(款)[직원. 참의. 주안(職員. 參議. 奏案) 35조(條) 등으로 이뤄졌다. 그 3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정부의 구성원은 총리대신을 개칭한 의정, 내부대신이 예겸하는 참정, 외부. 탁지부. 군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 등 6부의 대신을 포함한 11인의 찬정, 그리고 참찬 1인 등이었다. 다음으로 의정부 회의는 각료들만 개최할 수 있었던 내각제도와는 달리 국왕이 회석(會席)에 친림(親臨)하거나 왕세자가 대림(代臨)한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 규칙. 제도의 신. 개정(新. 改定) 및 폐지, 외국과의 개전(開戰)과 조약체결, 내란진압, 전선. 철로. 광업개설, 세출입의 예. 결산 및 예산외의 특별지출, 조세제도 개혁, 직원봉급의 개정(改正), 민유(民有) 토지. 삼림의 보상, 대군주폐하의 특별하부(特別下付) 사항, 법률. 장정의 반포 등 국정전반의 중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안에는 국왕이 의정부에서 결정된 의안을 재론시키거나 부결된 의안을 재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up>65)</sup> 이상으로 미루어 새로운 의정부는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약화되었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sup>66)</sup> 갑오개혁기 개화파에 의한 정체(政體) 변혁의 최대 목표가 군주의 정무권한을 배제하고 내각(1895년 3월 이전 명칭은 의정부)의 실권을 제고하는 데 있었다면, 1896년 9월 24일 단행된 내각제 폐지 및 의정부 제도로의 복귀는 왕의 국정운영권을 제도적으로 복원시킨 조치였다. 그렇다고 조선왕정부시대 의정부로 돌아간 것은 아니어서, 이전 내각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부 수반인 의정(議政)의 위상을 다분히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대신 국왕이 ‘만기(萬機)를 통령(統領)한다’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전제군주국가로서의 정체를 분명히 하였다. 내용적으로도 왕은 의정부회의의 결과에 상관없이 재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의정부는 단지 국왕의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sup>67)</sup> 의정부는 이제 중요 국정을 논의하고 집행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왕의 의도대로 주요 현안을 하달 받아 형식적인 논의를 거친 후 재가를 신청하는 통과기관이 되고 있었다.<sup>68)</sup> 갑오개혁기에는 내각(의정부)의 총리대신이 정부 수반이 되어 내각회의에서 법률.칙령, 예산.결산, 내.외 국채, 국제조약 및 국제적 사안, 칙.주임관의 임명, 조세의 신설.존폐.변경 등의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 중 왕의 재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며, 내각이 청한 안건을 왕이 재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다시 회의에 하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었었다.<sup>69)</sup> 그러므로 고종이 “군주권

64) <<高宗實錄>> 建陽 元年 9월 24일조: <<法令資料集>> 2, 177~178쪽, 詔勅.

65) <<高宗實錄>> 建陽 元年 9월 24일조, 議政府官制; <<法令資料集>>2, 179~184쪽, 勅令 제1호.

66) 송병기, <광무년간의 개혁>, <<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58~59쪽.

67) <<韓末近代法令資料集>> 2, 177~178쪽, 詔勅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하는 건> 및 179~184쪽, 칙령 1호 <議政府官制> 참조.

68) 오연숙, <대한제국기 의정부의 운영과 위상>, <<역사와 현실>> 19, 1996, 참조.

69) 1894년 6월 28일에 발표된 <議政府官制> (<<韓末近代法令資料集>>1, 4~5쪽)와 1895년 3월 <內閣官制> (<<韓末近代法令資料集>> 1, 198~199쪽) 및 <內閣奏請及指令規則> (<<韓末近代法令資料集>> 1, 236쪽) 참조.

이 없는 허위를 감내하느니 차라리 대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체(國體)를 변혁해서 새로 공화정을 하든지 대통령을 선출하든 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sup>70)</sup>고 역정을 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1896년 고종의 아관이어(俄館移御)는 고종이 주도적 입장에서 행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종은 일본의 압제 속에 왕권(王權)을 제한하는 친일적 내각을 붕괴시키고, 을미사변에 대한 복수와 왕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을 주도했던 것이다. 고종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근왕세력을 활용하여 의병활동과 은밀하게 연계하여 아관이어(俄館移御)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개국이래로 추진하여 오던 ‘균세(均勢)’정책<sup>71)</sup>의 일환으로 ‘인아거일책(引俄拒日策)’을 써서 러시아를 이용하여 일본세력을 제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고종은 정동파(貞洞派)라 불리는 친미, 친러(親美, 親露)세력을 적극 이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종의 궁극적 목적은 약화된 왕권을 되찾아 강화하고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이어하여 친일내각이 붕괴된 이후에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정국운영을 구상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동파를 견제하고 자신의 전제적(專制的) 왕권(王權)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의정부제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종은 자신이 목적했던 바대로 전제적 왕권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정국운영에서도 고종은 정부대신들을 압도적으로 리드하였다.<sup>72)</sup> 이것은 결국 환궁 후 대한제국의 선포와 고종의 황제 즉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관이어는 고종이 1873년 친정 이후 지속해 온 왕권강화노력의 연결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대한제국(大韓帝國)과 광무개혁(光武改革)

### 1) 제국의 성립

1897년 2월 20일 고종은 국내,외적 여론을 등에 업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환궁 후에 고종은 김병시, 정범조 등 동도개화파들을 등용하여 ‘구본신참(舊本新參)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70)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1992, 31~32쪽, 1895년 5월 30일 井上馨 공사 보고 機密 제 57호 <朝鮮內閣의 破裂> 別紙 丙號.

71) 1880년대 초기부터는 초기 근대화정책과 더불어 균세론(均勢論)에 의거 구미제국과도 수호,통상관계를 추진해나갔다. : 김경태, <중화체제, 만국공법질서의 착종과 정치세력 분열>, <<한국사>> 11권, 한길사, 1994, 88쪽; ‘균세’정책은 <<朝鮮策略>>의 수입이후 고종과 조선정부 채택한 대외정책이었다.: 은정태, <高宗親政 이후 政治體制 改革과 政治勢力의 動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22쪽 참조.

72) 高宗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유약한 봉건군주의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으나, 이는 주로 피상적으로 高宗을 관찰한 서양인들의 인상기나 일본측의 악의적 왜곡에 의존한 결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태진, <高宗황제 암약설 비판>, <<동북아>> 5, 1997, 참조. ; 매년 황현의 기록에 의하면, 高宗은 평소에 ‘부강’에 뜻을 가지고 여러 개혁조치들을 시도하면서 믿고 의지할 만한 신하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는데, 다산의 <<여유당집>>을 보면서도 정약용 같은 인물이 다시 없음을 개탄하였다고 한다.(黃玹, <<梅泉野錄>> 卷之一 上(甲午以前), 32쪽. “今上銳志富強 紛紛變更 恨群臣無可仗者 乙酉丙戌間 命進與猶堂集 慨然有不同時之歎”) 그는 또한 “스스로 웅대한 뜻과 불세출의 자질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위로 열성조에 비교될 뿐 아니라 동방에 처음 있는 군왕이 되려고 정권을 거머쥐고 세상 일에 분주했다”고 평가될 만큼 개혁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黃玹, <<梅泉野錄>> 卷之一 上(甲午以前), 73쪽, 1882년 10월조 “上自負雄才 大略爲不世出之資 總攬權綱 奔走一世 交通重譯 羅絡五洲 非徒上比祖烈爲有餘裕 抑足爲東方創有之君”)

우선 고종은 1897년 8월 16일 연호를 '광무(光武)'라고 고쳤다. 그리고 이 해 10월 12일 제천단인 환구단(圜丘壇)에서 황제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하였다. 이어 1899년 8월 17일에는 9개조에 걸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공포하였다.

## 2) 대한제국의 성격에 대한 평가

대한제국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i) 부정적 평가: 정치면에서는 국민주권체제와 거리가 먼 황제권의 전제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 점에서 왕권을 견제하려 했던 면이 일부 있었던 갑오개혁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

ii) 긍정적 평가: 대한제국과 그 개혁 사업을 지배층 중심의 근대적 개혁사업의 마무리로 파악, 광무개혁이 갖는 근대성을 평가.

iii) 절충론적 평가: 정치상황은 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수화되어갔으나, 사회경제적으로는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

대한제국의 성격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한제국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 3) 대한제국과 외세

대한제국 성립기인 1890년대 후반은 국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의 갈등이 첨예화된 시기이다. 이는 양국간의 협상을 통해 경계분할론이 제기되는 등 세력균형의 유지의 협상을 벌였다. 특히 러시아의 남하(南下)를 강력히 반대하던 영국은 러시아의 만주점령이 가시화되자, 영일동맹(英日同盟, 1902)을 맺어 한국과 청에서의 기득권 확보를 공고히 했다. 이에 러시아는 일본·미국 등과 함께 3국 공동보장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안을 구상하였고, 결국에 협상이 결렬된 양국은 러일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 4) 광무개혁(光武改革)의 주요 내용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황제로서 재위한 1897년부터 1907년까지 추진된 개혁을 고종의 연호인 광무년간에 추진된 개혁이라는 뜻으로 '광무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다.<sup>73)</sup>

대한제국 시기 고종 황제는 국가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 국방력과 재정력 그리고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력 강화와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고,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侍衛隊)와 지방의 진위대(鎭衛隊)를 대폭 증강하였다.

둘째,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토지조사사업[양전(量田)]과 지계(地契) 발급사업으로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확립되고, 국가재정이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셋째 식산흥업(殖産興業)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 및 상공업 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넷째, 근대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교통과 통신 등을 근대화하였다.

광무개혁은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국방, 산업, 교육, 기술면에서 높은 근대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만약 일본의 방해가 없었다면 대한제국은 근대산업국가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73) 광무개혁에 대해서는 한영우, 앞의 책, 89~93쪽과 송병기, 1981, <2. 광무년간의 개혁>, <<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44~109쪽 참조.

<참고자료 1>

大韓國國制

第1條 大韓國은 世界萬國의 公認되온 바 自主獨立하온 帝國이니라.

第2條 大韓帝國의 政治는 由前則 500年 傳來하시고 由後則 亘萬世不變하오실 專制政治 이니라.

第3條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無限하온 君權을 享有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立政이 니라.

第4條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 享有하옵시는 君權을 侵損하올 行爲가 有하면 其 已行 未 行을 勿論하고 臣民의 道理를 失한 者로 認할지니라.

第5條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國內 陸海軍을 統率하옵시어 編制를 定하옵시고 戒嚴 解嚴 을 命하옵시나니라.

第6條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法律을 制定하옵시어 其 頒布와 執行을 命하옵시고 萬國의 公共한 法律을 效倣하사 國內 法律도 改定하옵시고 六赦 特赦 減刑 復權을 命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定律例이니라.

第7條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行政 各府部의 官制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 或 改正하옵시 고 行政上 必要한 各項 勅令을 發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行治理이니라.

第8條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文武官의 黜陟 任免을 行하옵시고 爵位 勳章 及 其他 榮典 을 授與 或 遞奪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選臣工이니라.

第9條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各有約國에 使臣을 派送 駐紮케 하옵시고 宣戰 講和 及 諸 般約條을 締結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遣使臣이니라.

-출처: <<官報>>, 光武 3年 8月 19日

(3) 독립협회운동

1) 독립협회의 성립과 참여 세력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라는 사교단체가 결성되었다. 그 주체는 정부의 친미(親美), 친러(親露)적인 고급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미국으로 망명했던 변법개화파의 한 사람인 서재필(徐載弼)을 독립협회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서재필은 서구의 시민사상을 전파하는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재필과 같은 변법개화파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세력들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중국 문화를 경시하였다. 이들은 자유(自由), 민주(民主), 평등(平等)과 같은 서양의 이념들을 선망했다. 이들이 표방하는 독립은 청(淸)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독립협회에는 이러한 흐름과 다른 흐름이 생겨났다. 1897년 8월 대한제국이 성립할 무렵부터 점차 계몽 단체로 바뀌어 갔던 것이다.<sup>74)</sup> 윤치호, 이상재, 남궁억, 정교, 나수연 그리고 학생 시민들이 참여하였는데, 남궁억, 정교, 나수연은 <<황성신문>>계열의 동도개화파(東道開化派)였다. 이들은 유교(儒敎) 문화를 긍정하는 인사들이었다. 그렇기에 서재필과 같은 변법파와 다른 시각을

74) 한영우, 앞의 책, 93~95쪽 참조.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자신들의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독립협회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독립협회에는 두 갈래의 세력과 사상적 흐름이 있었던 것이다. 그 하나는 서재필, 윤치호 등 변법개화파적 세력과 이들이 도입하고 수용한 서구 시민사상적 조류(潮流)이다. 다른 하나는 남궁억 정교 등 동도개화파적 세력으로 이들은 개신(改新) 유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국내 개혁사상이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독립협회는 신지식인과 유학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도시상인과 농민, 노동자 등 광범한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 2) 독립협회 운동의 내용

독립협회 운동은 크게 주권독립운동(主權獨立運動)과 민권운동(民權運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권독립운동 [주권수호운동(主權守護運動)]은 첫째 조선의 독립국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屬國)인 왕국(王國)에서 자주 독립한 황제국(皇帝國)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활동했다. 이들은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요구하는 상소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둘째로 이들은 국민의식(國民意識)의 독립(獨立)을 강조하였다. 모화적(慕華的) 종속관계(從屬關係)의 탈피를 주장하면서 구체적 활동으로 독립신문(獨立新聞)의 창간, 독립문(獨立門), 독립회관(獨立會館), 독립공원(獨立公園) 등을 세웠다. 셋째로 강대국에 대한 이권양여(利權讓與)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다른 한편 민권운동(民權運動)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크게 인권신장운동(人權伸張運動)과 인민참정권운동(人民參政權運動)으로 나눌 수 있다. 인권신장운동은 천부인권사상(天賦人權思想)에 근거(根據)하여 국민(國民)의 생명(生命)과 재산권(財產權) 보호(保護)를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 참형(斬刑)제도와 연좌제(連坐制)를 인권의 측면에서 저지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권신장운동 못지 않은 민권운동의 핵심이 바로 인민참정권운동이다. 민권을 지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바로 인민(人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입법화(立法化)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민참정권운동은 의회설립운동(議會設立運動)으로 구체화 된다. 독립협회는 일종의 상원(上院) 설치안으로 중추원(中樞院)을 강화하여 의회(議會) 구실을 하게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 중추원의 의관(議官)을 50명으로 하되 절반은 관선(官選), 절반은 민선(民選)으로 하며 민선의관 25명은 전원 독립협회 회원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향간에는 독립협회가 공화정부(共和政府), 대통령제(大統領制)의 신정부를 만든다는 풍문이 떠돌게 된다. 황제를 폐위한다는 이와 같은 보고에 자극된 고종 황제가 결국 독립협회 해산시킨다. 이로써 독립협회 운동은 1898년 12월 활동을 끝내게 된다.

## 3) 독립협회 활동에 대한 평가<sup>75)</sup>

독립협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그 하나는 독립협회의 활동은 한국 근대민족운동 중 가장 애국적(愛國的) 운동 중 하나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애국은커녕 외세를 등에 업은 반민족적(反民族的) 운동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전자가 주로 한국학계의 '전통적'인 견해라면, 후자는 주로 북한학계의 초기 연구경향에서 보이는 견해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는 한국학계에서도 후자와 유사한 견해들이 등장한 바 있다.<sup>76)</sup>

75) 이민원, <독립협회. <<독립신문>>의 민족주의적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0, 94-97쪽.

76) 하원호, <부르주아민족운동의 발생. 발전>, 안병우, 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II, 한길사1990, 116~130쪽; 인용하는 독립협회의 사상과 운동을 대한제국 개혁파의 민족, 민주운동 즉 부르주아적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시기와 사안에 따라 고종과 정부와 독립협회의 의견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했다는 점이다. 정부나 독립협회가 국내정치나 외교문제를 놓고 협조하기 했고, 때로는 상반된 행동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고종 측에 대해 시종 적대적이었던 것처럼 혹은 친일, 친미, 친러 등의 흑백논리로 본다면 무리가 많다. 양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이합집산하면서 대처하는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77)</sup>

#### (4) 철도와 전기

19기 중엽부터 20세기 초는 가히 '철도의 시대'라고 할 만큼 철도가 발전한 시기였다. 철도는 대규모 상품 유통과 국내 시장의 형성 수단으로 발전함으로써 근대적 교통수단의 상징이 되었다. 철도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단일한 경제권과 의사소통의 공간을 창조한 수단으로 기능한 동시에 초기 자본주의의 확대와 수탈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철도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의 대상이 된 식민지, 반식민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 철도는 근대화 과정과 비슷한 경로로 부설되며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 수출의 대상이자 상품 수출 및 원료수탈의 맥관(脈管)으로서 기능하였다. 즉 경제적 수탈과 군사적 지배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1899년 9월 18일 경성과 인천 간에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철도는 조선의 근대화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부설되었다. 경부선은 조선이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부설되고 있었는데, 종관철도(縱貫鐵道)로서<sup>78)</sup> 일본-한국-만주를 잇는 최단거리로 부설되었다. 경부선 철도를 만들기 위해 총 1,933만평의 용지가 징발되고 연인원 1억여 명의 노동자들이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였다. 철도의 부설과정에서 국권과 국토,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근대 문명의 흥기로 인식되어 민중들의 저항을 받았으며, 철도나 정거장을 습격하는 의병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철도는 국권과 국토 및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근대 문명의 흥기로 인식되어졌고, 철도부설 과정은 한국인의 생명과 생활 자체를 희생 삼아 만들어 낸 'human cost'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한반도에 전기가 처음 가설된 것은 1887년 1월 26일 경복궁 건청궁에서<sup>79)</sup> 최초로 점등(點燈)하였는데, 이 점등식을 본 사람들은 '건달불, 나라에 불길한 불' 등으로 평가하였다. 한반도의 전기는 처음 이채연이 주도하는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는데, 그 운용과정에서 이용익과 콜브란트의 대립하였다. 이후 한성전기회사는 전기와 전차를 운영하였으나, 식민지로 전락하며 일본인들의 간섭이 심해졌고 결국 1909년 일본인 회사에 인수되었다.

민간에 최초로 전기가 공급된 것은 1901년 진고개 일본 상점가에 600개의 전등이 가설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45년까지 약 10%의 전등이 보급되었는데, 전기 공급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이 존재하였다. 식민지 시기 산업용 전력을 짠 가격에 공급되었던 것에 비해, 민간에는 일본 보다 30~40% 높은 가격에 공급되었으며, 일본인들이 정착한

---

개혁으로 봄. 이에 대한 반론으로 김용섭은 개혁의 주류를 광무정권의 정책에서 찾음. 강만길은 독립협회운동은 민권운동이 아니라 황제권 강화운동으로 봄. 최근의 연구는 반론을 강화하여 독립협회의 정체론이 황제권 강화이며, 외교론은 반러, 친미영일 외교론이며 경제적으로는 '매판적, 지주적 부르주아지'의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77) 이민원, 1994, <대한제국의 개혁과 그 실태-정부와 독립협회의 황권인식과 관련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참조.

78) 세로나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철도.

79) 건청궁은 민비가 거주하던 곳으로 을미사변 당시 민비가 시해당한 곳이기도 하다.

경성의 남촌은 대규모 전기 시설을 갖추며 '불야성'을 이루었으나, 조선인들이 거주하던 북촌은 1930년 중반까지 가로등 가설도 없는 실정이었다.

### 참고자료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송병기, <광무년간의 개혁>, <<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신용하, <광무개혁론의 문제점>, <<창작과 비평>>49.

신용하,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한국사연구입문>>.

이민원,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 <<동양학>>30.

이종범 · 최원규 편, <<자료 한국근현대사입문>>, 혜안.

주진오,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한국역사입문>>3.

한국사연구회, <<제2판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한 국 역 사 >>,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 ③>>, 풀빛.